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6조(부담금의 부과기준)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례) 이 영은 2024년 7월 1일 이후의 전기요금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.
- ③ (경과규정) 개정된 시행령 제36조의 적용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하고,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부담금의 부과기준)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은 전기요금의 <u>1천분의 37</u>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	제36조(부담금의 부과기준)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은 전기요금의 <u>1천분의 27</u>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882